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1. 28 선고 2019가합103701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부산고등법원 2022. 4. 20 선고 2021나52757 판결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1. 28 선고 2019가합103701 판결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

담당변호사 김막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현재

담당변호사 문봉식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미진, 조미옥

피고보조참가인

주식회사 C

변론 종결 2020. 11. 16

판결 선고 2021. 1. 28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1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갑 제1부터 5호증까지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, 이하 같다)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거나,기록상 명백하다.

- 1)금속단조제품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8 . 12. 27. 3D 프린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D 3D 프린터 2대 등을 ① 공급금액 1,455,2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,② 인도일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(계약서 제3조 본문)로 정하여 납품 받기로 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- 2)원고는 같은 달 31. 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계약이 정한 계약금합계 700,000,000원(= 같은 달 27. 300,000,000원 + 같은 달 31. 400,000,000원)을 모두 지급하였다.
- 3) 피고는 2019. 1. 31.(2018. 12. 31.로부터 1개월)까지 원고에게 위 프린터 2대를 인도하지 않았다.

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9. 10. 15. 제1차로 2019. 10. 18.까지, 2019 . 10. 18. 제2차로 2019

. 10. 22.까지 각각 '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장비를 납품하라.

'는 취지로 최고하였으나,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위 프린터 2대를 인도하지 않았다.

4)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.

나. 원상회복 의무의 발생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납품 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원고의 이행 최고 및 해제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.

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700,000,000원을 반환하고, 이에 대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. 11. 7.(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)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(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)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항변 요지

원고가 위 계약 체결 이후 임의로 위 프린터 2대가 아닌 1대만 공급 받겠다면서 위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, 피고의 2대 공급 채무의 불이행에 피고의 책임이 없다.

나. 판단

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.

그러므로 채무자는 이행을 지체한 이상 그 이행지체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(민법 제390조 단서,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0다177판결 참조).

갑 제5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항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증거가 없다.

그러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재판장 판사 임 효 량판사 김해마루판사 정 예 지